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국가재정법상 제도 정비〉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21056호)

2026. 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4
2. 총괄적 검토	6
3. 주요사항별 검토	7
가. 일반회계 세입부족 보전을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전입 (안 제53조제2항 등)	7
나.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허용 범위 (안 제70조제3항 등)	15
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보조사업의 이월 특례(안 제72조) ..	22
라. 초과 조세수입 및 세계잉여금의 미래대응기금 전입(안 제90조) ...	27
마.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미래대응기금 관련법 추가(안 별표 2) ...	35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부

나. 제 출 일 : 2026. 9. 3.

다. 회 부 일 : 2026. 9. 4.

II. 제안이유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공지능 혁신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통한 국가 재정 운용의 안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의 일반회계 전입(안 제53조제2항제3호 신설)

특정 회계연도에 세수결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세입 보전을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의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미래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70조제3항, 안 제70조제6항 단서 신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1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변

경하는 경우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래 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경우와 초과 조세수입을 활용하여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미래대응기금 지출사업의 이월(안 제72조제1항제2호 신설)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 지출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함.

라. 초과 조세수입의 미래대응기금 전입(안 제90조제1항제2호 신설)

세입예산의 재추계를 통해 초과 세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그 초과 조세수입을 미래대응기금에 세입·세출 외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세계잉여금의 미래대응기금 전입(안 제90조제5항)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및 채무 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

바. 미래대응기금 설치 근거법률 추가(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미래대응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

IV.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개정안은 경기 및 세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입여건이 양호한 시기에 재원을 적립하였다가 세입부족 시 활용하는 재정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역, 교육·인재 분야에 대한 미래대응투자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국가재정법」상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족 발생 시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일반회계에 전입하고 이에 필요한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래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범위를 일반적인 기금보다 확대하고, 지방계정의 지출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월요건보다 완화된 특례를 적용하며, 초과 조세수입과 세제잉여금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의 재정통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경우와 초과 조세수입을 활용하여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초과 조세수입을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한 경우에도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세입 보전 절차	예산 총계주의	모든 수입·지출의 예산 계상 원칙 (예외사유 규정)	세입부족 보전 목적의 미래대 응기금 전입은 세입·세출 외 처리 * 추가경정예산 없이 세입경정 가능
	기금 전출	별도 규정 없음	미래대응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시 변경한도 없는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허용
	국회보고	별도 규정 없음	지체 없이 기금운용계획 변 경사항을 소관 상임위·예결 위에 제출
기금의 변경 (주요항목 지출금액 기준)	변경범위	- 금융성기금 30% 이내 - 그 밖의 기금 20% 이내	- 미래대응기금 30% 이내
	국회보고	<u>분기말일이 속한 달의 다음날 까지</u> 소관 상임위·예결위 제출	<u>초과 조세수입 관련 미래대응 기금 변동시:</u> <u>지체 없이</u> 소관 상임위·예결 위에 제출
예산이월의 요건		<u>지출원인행위 후 다음연도 까지</u>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보조 사업: 불가피한 경우 다음다 음연도 까지
초과 조세수입	사용	① 세입부족 보전용 당해연도 발행 금액범위 국채 상환	① 현행과 동일 ② 미래대응기금 전출
	국회보고	별도의 규정 없음	전출 내역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예결위에 제출
세계 잉여금	산정기준	결산상 잉여금에서 법정 공제액·이월액 등을 제외	미래대응기금에 이미 전출한 초과 조세수입 추가 공제
	사용기준	① <u>교부세·교부금</u> 정산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③ 국가채무 상환 ④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	① <u>교부세</u> 정산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④ 추가경정예산 재원 또는 <u>미래대응기금 전출</u>
기금설치 근거		<신설>	국가재정법상 별표에 미래대응 기금 추가

2. 총괄적 검토

미래대응기금은 기본목적상 세수여건이 양호한 시기에 재원을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부족하거나 미래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재정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미래대응투자를 실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경기·세수 및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예산·기금보다 일정 수준의 탄력적인 운용을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이러한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범위 확대, 지출사업 이월요건, 초과 조세수입 및 세계잉여금의 미래대응기금 전출 등 여러 특례를 두고 있음.

이들 특례에 따라 정부는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국회의 추가적인 의결 없이 일정한 범위에서 지출규모를 변경하고, 일반회계 세입부족 발생 시 국회 사전심사 절차 없이 기금 여유재원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게 됨.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운용의 신축성이 확대되는 반면 국회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적 심의·통제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의 재정안정화 기능과 탄력적인 운용의 필요성 자체와 이를 위하여 개별적인 「국가재정법」상 특례까지 인정할 필요성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각 특례가 예산총계주의·회계연도 독립원칙 등 국가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국회의 예산심의권 및 국가채무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주요사항별 검토

가. 일반회계 세입부족 보전을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전입 (안 제53조제2항 등)

현 행	개 정 안
○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53 제2항) - 국가가 수입을 세입예산에, 지출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현물출자, ② 외국차관 전대(轉貸)	○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53 제2항) - 국가가 수입을 세입예산에, 지출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현물출자, ② 외국차관 전대(轉貸) ③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부족 보전을 위하여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
<신 설>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70 제3항제7호 및 제6항 단서) -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부족 보전을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 변경 허용 * 변경 가능 금액에 대한 별도 한도 없음 - 해당 변경내역은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

개정안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 현행법 제17조¹⁾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²⁾’의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 전입금을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일반회계 재원

1)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2)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정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국가의 재정활동 전반을 예산의 형식으로 투명하게 파악하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한 재정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2, p.183)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미래대응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액 한도를 두지 않는 대신, 그 변경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³⁾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른 경우 회계연도 중 일반회계의 세입부족이 발생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에 추가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반영하고, 미래대응기금에서도 일반회계 전출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이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법정 자체변경 범위⁴⁾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함.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부족 보전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인정하므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변경 없이 기금재원을 전입할 수 있고, 미래대응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해서도 금액의 제한 없이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됨. 다만, 그 변경내역은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3)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예상

4) 사업성기금은 주요항목(장·관·항) 지출금액의 20% 이내, 금융성기금은 주요항목(장·관·항) 지출금액의 30% 이내

참고로,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는 미래 대응기금 총괄계정의 세부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출(8810-900) 12조 5,00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일반회계 세입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세부사업에 편성된 금액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음.

개정안은 일반회계 세입부족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된 금액을 초과하여 전출하거나 별도의 전출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정안은 일반회계의 세입부족으로 국회가 이미 심의·확정한 세출사업이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인정될 수 있음. 또한, 세입부족 발생 시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미래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신속하게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다만, 당초 국회가 의결한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중 상당한 규모로 변경하면서도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신축성이 확대되는 반면 국회의 사전적 재정통제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로 볼 수 있음.

[세입부족 보전을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절차 비교]

구 분	현행 국가재정법	개정안
일반회계	추경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세입예산에 반영	추경 없이 세입부족 보전 가능
미래대응 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필요, 자체변경 한도 초과 시 국회 의결 필요	일반회계 세입부족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은 별도의 금액 한도 없이 국회 의결 없이 변경 가능
국회 통제	세입예산: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사전 심의 및 의결	세입예산: 추경을 통한 별도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 없음
	기금운용계획: ① 자체변경 한도 내 변경시, 분기 단위로 소관 상임위·예결위에 변경내역 제출 ② 자체변경 한도 초과시, 국회의 사 전심의 및 의결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예결위에 변경내역 제출

세수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미래대응기금의 적립재원을 활용하여 급격한 지출축소나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입부족 시 기금재원을 활용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재정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일반회계에 전입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예산총계주의 예외 인정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산총계주의는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임.

현행법⁵⁾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서 ① 현물출자·외국차관 전대

5)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등 거래의 특성상 세입·세출예산에 모두 계상할 실익이 낮은 경우, ② 환율·금리 변동 등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출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③ 수입과 직접 연계된 경비의 초과지출 및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미래대응기금의 일반회계 전입은 특정 거래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의 세입부족 자체를 기금재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서 기존 예외와 성격이 다르고, 별도의 전출한도 없이 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9월말 세입 재추계 결과 세입 결손이 예상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을 감액경정하고 미래대응기금 적립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보강할 경우, 추경 편성과 국회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집행기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재원 보강을 통해 실질적인 집행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입·세출 외 처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임.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 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 1. 1.>

⑥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가 출자한 펀드(이하 “자펀드”라 한다)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

⑦ 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둘째, 세출조정 및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세입부족을 현행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기금재원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되면 경기하강기에 필요한 재정지출을 유지하고 경기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세입여건 변화에 따른 세출조정이나 지출 우선순위 재검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고, 세입부족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기금재원 활용이 반복적으로 선택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더라도 세입부족시 다른 회계·기금 여유자금 예수·예탁, 일반 재정지출 사업 불용 등 운용과정에서 기존 수단들과 병행하여 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임.

셋째, 국회의 사전적 재정통제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일반회계 전출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을 국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여 사후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이미 이루어진 변경내역을 보고하는 절차로서 국회가 전출의 필요성 및 규모를 사전에 심의·의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

이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개정안에서도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은 9월 말 세입 재추계 결과 발생한 세입 부족액을 한도로 하고, 경제·재정 여건과 재정증권 발행, 한국은행 일시차입, 세출조정 등 기존 대응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며, 해당 전출이 국회에서 확정된 지출계획의 차질 없는 집행과 적기 재원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생략)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신 설>	1.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신 설>	2.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
<신 설>	3.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보전(補填)을 위하여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이하 “미래대응기금”이라 한다)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 ----- ----- ----- -----.

[illegible]

나.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허용 범위 (안 제70조제3항 등)

현 행	개 정 안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70 제3항제2호 및 제6항) - 기금운용계획안변경안을 국회에 사전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범위 • 금융성 외 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 금융성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 변경내역 국회보고 • 분기말일이 속한 달의 다음날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예결위 제출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70 제3항제7호 및 제6항 단서) - 기금운용계획안변경안을 국회에 사전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범위 • 금융성 외 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 금융성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 미래대응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 변경내역 국회보고(미래대응기금) • 초과세수를 활용한 경우: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예결위 제출 • 그 밖의 경우: 분기말일이 속한 달의 다음날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예결위 제출

현행 「국가재정법」은 금융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자금운용 규모의 변동성이 큰 금융성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⁶⁾에 대해서는 30% 이하, 그 밖의 기금은 20% 이하의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참고로, 「국가재정법」 별표3에 따르면 금융성기금은 기술보증기금 등 8개 기금을 금융성기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국가재정법상 기금유형별 주요항목 자체 변경 허용범위]

구분	갯수	자체변경 허용범위	사 례
금융성기금	8개	30%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그 밖의 기금	59개	20%	고용보험기금, 복권기금, 기후대응기금

* 주: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재정」, 2026, pp.16~20.

6)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은 「국가재정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장·관·항으로 구분되며, 기금 운용계획 변경 시에는 이 중 항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단위를 기준으로 자체변경 한도가 적용됨.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동향&이슈」, 2023, p.66.)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금융성기금과 동일하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이하까지 자체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초과 조세수입을 활용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역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미래대응기금은 세수여건 악화 등에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 성장동력, 지역, 교육·인재 등 중장기 미래대응 분야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경기·산업환경 및 재정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운용상 신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미래대응기금에 대하여 금융성기금과 동일하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까지 자체변경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미래대응기금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미래대응기금은 세수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기능과 청년, 성장동력, 지역, 교육·인재 등 미래대응투자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금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운용상 신축성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법상 30%의 자체변경 한도가 적용되는 금융성기금은 보증·보험·채권상환·저축장려 등 금융거래와 직접 연계되어 금융시장 상황이나 자금수요에 따라 지출규모의 변동성이 큰 기금들임.

이에 비해 미래대응기금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총지출 52조 9천억원 중 사업지출이 45조 4천억원으로 약 86%를 차지하고,

청년 일자리·주거·문화 지원, AI·전략기술·R&D, 지역산업 및 정
주환경 개선, 국립대학 지원 등 정책목표와 지원대상이 사전에 정해진
사업성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성기금과는 지
출구조에 차이가 있음.

[2027년 기금운용계획안 상 미래대응기금의 구조]

구분	규모 (조원)	비중 (%)	주요내역	
수입	162.3	100	일반회계전입금(158.4조원), 특별회계 예수금(2.5조원 등) 등	
지출	52.9	32.6	사업지출 45.4조원, 여유자금 7.5조원	
	청년계정	13.3	8.2	청년 일자리·창업, 주거안정, 자산 형성, 혼인·출산, 생활·문화
	성장동력계정	14.2	8.7	AI, 전략기술, 지분투자, 전력·용수
	지방계정	15.3	9.4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농어촌, 행정통합 등 * 여유자금: 5조원
	교육·인재계정	10.1	6.2	초격차인재, 고등·영유아 * 여유자금: 2.5조원
자금 운용	총괄계정	109.4	67.4	여유자금 96.9조원, 국채신규발행 축소 12.5원

* 주: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정리

둘째, 30%의 자체변경 한도를 적용할 경우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은 「국가재정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장
· 관 · 항을 기준으로 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에는 실무상 항에 해
당하는 프로그램 단위로 자체변경 한도가 적용됨. 따라서 미래대응기
금과 같이 프로그램별 지출규모가 큰 기금에 30%의 한도를 적용할
경우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를 수 있음.

특히 동일 프로그램 내에 다수의 세부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 수준에서 상당한 재원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래 대응기금 전체에 일률적으로 30%의 자체변경 한도를 적용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미래대응기금은 각 사업계정의 정책사업이 하나의 대규모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어, 프로그램 단위로 적용되는 자체변경 한도의 절대금액이 크게 산정되는 구조임.

예를 들어,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의 사업계정별 프로그램 규모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30%의 자체변경 한도 적용 시 청년종합 지원은 약 3조 9,900억원, 성장동력확충은 약 4조 2,600억원, 지방주도성장은 약 3조 900억원, 교육·인재지원은 약 2조 2,800억원까지 변경이 가능함.

이는 현행 20% 한도를 적용하는 경우보다 자체변경 가능액이 사업 프로그램별(여유자금운용 제외)로 0.8조원~1.4조원이 확대되는 수준으로, 미래대응기금의 프로그램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음.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사업계정의 예산구조]

계정	프로그램	예산 (조원)	자체변경 범위 (조원)		하위사업 건수	
			20%	30%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청년계정	청년종합지원(4200)	13.3	±2.66	±3.99	6	22
성장동력계정	성장동력확충(4300)	14.2	±2.84	±4.26	7	52
지방계정	지방주도성장(4400)	10.3	±2.06	±3.09	3	13
	여유자금운용(9700)	5.0	±1.00	±1.50	1	1
교육·인재 계정	교육·인재지원(4500)	7.6	±1.52	±2.28	7	43
	여유자금운용(9700)	2.5	±0.50	±0.75	1	1

* 주: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6.9 참고 후 작성

셋째, 미래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에 대한 국회보고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초과 조세수입을 활용하여 미래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역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밖의 자체변경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분기별 사후보고 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초과 조세수입의 활용은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재원이 회계연도 중 편입·지출되는 경우라는 점에서 보다 신속한 국회보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 전체에 대하여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자체변경 한도를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있어, 초과 조세수입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음.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계정별 프로그램 규모가 크고 다양한 사업성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0% 자체변경 특례를 적용하면서 지체 없는 국회보고 의무를 ‘초과 조세수입을 활용한 변경’에만 한정하는 것이 충분한 통제장치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하여 30%의 자체변경 한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 조세수입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자체변경하는 경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 변경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 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u>기금</u> 은 주요항목 지출금액 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u>기금</u> <u>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u> <u>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u> <u>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u> <u>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u> <u>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u> <u>분의 2 이하로 한다.</u> 3. ~ 6. (생략) <u><신 설></u>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 <u>기금(미래대응기금은 제</u> <u>외한다)은</u> ----- 2. ----- <u>기금</u> <u>및 미래대응기금은 주요항목</u> <u>지출금액(제7호는 제외한다)-</u> -----. ----- ----- -----. 3. ~ 6. (현행과 같음) 7. <u>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u> <u>보전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u> <u>의 일반회계로의 전출금</u>

[illegible]

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보조사업의 이월 특례(안 제72조)

현 행	개 정 안
○ 지출사업의 이월 (§72제1항제2호) - 기금관리주체의 지출금액 이월 허용 ①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 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 로 연도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 다음연도까지	○ 지출사업의 이월 (§72제1항제2호) - 기금관리주체의 지출금액 이월 허용 ① 현행과 동일 ②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보조사업 중 불가피한 사유 로 해당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 다음다음 연도 까지

현행 「국가재정법」 제72조는 기금의 지출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⁷⁾를 하고도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금액에 한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지출도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내에 집행하도록 하되, 이미 사업집행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월을 허용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한편,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계약 및 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음.⁸⁾

7) 국가가 특정 지출을 해야 할 법적·계약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공사도급계약 체결, 물품 구매계약 체결, 보조금 교부결정, 연구용역·설계용역 계약 체결 등이 있음.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9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례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지출원인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기금보다 완화된 이월특례를 두려는 것임.

지역개발, 연구개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설계·계약 및 공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이월특례를 인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이월특례 적용범위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까지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연도에 사업추진이 구체화되지 않은 재원을 이후 회계연도에도 동일한 사업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독립원칙⁹⁾에 대한 폭넓은 예외에 해당함. 특히 기금은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않은 재원이 여유자금 등으로 유지되어 이후 기금운용계획에 다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다시 결정하는 방식도 가능함.

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9)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특례 적용대상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보조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다른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까지 포함될 수 있음. 실제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의 지방계정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이 사업시행주체로 제시된 보조사업도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집행여건과 사업추진 자율성을 고려하여 이월을 완화하려는 취지라면, 특례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 등 장기이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보다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세부사업]

사업명	계획액 (백만원)	사업유형	사업시행주체
국민생활편익 복합센터 지원(4432-300)	1,500,500	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지방미래성장지원금(4432-310)	3,500,000	직접사업	행정안전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이관사무 지원(4433-300)	650,000	보조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지방전부지원기금출연금(4433-310)	2,850,000	출연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4432-300)	100,000	보조사업	재정경제부
행정부처 지방이전 지원(4432-300)	89,725	직접사업	행정안전부
지방대도시 호텔건립 지원(4432-300)	152,281	융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4431-300)	1,165,765	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농림수산물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스마트폴필먼트센터 구축(4431-310)	5,500	출자 /보조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법인, 농업법인, 유통기업 등
농업 피지컬 AX 실증 프로젝트(4431-320)	20,810	보조사업	농식품부, 시·군·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4431-300)	5,500	출연 /보조사업	해양수산부, 민간기관, 한국어촌여항공단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4431-310)	45,162	출자사업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2차 선도이전 지원(4432-300)	181,004	보조사업	국토교통부, 소관부처, 2차이전 공공기관

* 주: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6.9 참고 후 작성

둘째, 중앙과 지방 단계에서 이월특례가 연속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17조¹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정 보조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의 기금관리주체 단계에서 이월된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후 지방단계에서 다시 이월되는 경우, 동일 사업재원의 집행시점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¹¹⁾.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법안에 따른 지방계정 보조사업 이월]

구 분	국가재정법 개정안	미래대응기금법안
대상사업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보조사업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보조사업
이월주체	기금관리주체 (기획예산처)	지방자치단체
이월범위	다음다음 연도까지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요건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 미지출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 미지출
적용단계	중앙의 기금관리주체 단계	지방자치단체 집행 단계

따라서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일부 사업에 대한 장기이월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중앙과 지방 단계의 이월특례가 연속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최대 4회계연도까지 이월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이월

10)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17조(지출사업의 이월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미래기금의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 지출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보조사업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해당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내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11) 예를 들어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편성된 지역개발 보조사업이 중앙의 기금관리주체 단계에서 사업계획 지연 등의 사유로 2029년도까지 이월된 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허가·설계·공사 지연 등으로 다시 2031년도까지 이월되는 경우, 2027년도에 국회가 심의·의결한 사업재원이 실제 집행되기까지 최대 수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음.

기간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아울러 중앙의 기금관리주체 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단계와 동일한 수준의 장기이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 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 하여 사용할 수 없다. <u>다만, 연 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 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 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u> <u><신설></u> <u><신설></u>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 ----- ----- -----<u>다만, 다음</u> <u>각 호의 금액은 해당 호에서</u> <u>정하는 기한까지 이월하여 사</u> <u>용할 수 있다.</u>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u>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u> <u>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 다</u> <u>음 연도까지</u> 2.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 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 른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 업 지출계획 중 불가피한 사 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 출하지 못한 금액: 다음다음 연도까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라. 초과 조세수입 및 세계잉여금의 미래대응기금 전입 (안 제90조)

현 행	개 정 안
○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활용계획 (§90의2) - 초과 조세수입 발생시 세입세출외 처리 허용: 세입부족 보전용 당해연도 발행국채 금액 범위의 국채 상환 -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 ① 결산상 잉여금 산정 (결산상 세입액 - 결산상 세출액) ② 이월금액 등 고려 세계잉여금 확정 ③ 지방교부세·지방재정교부금 정산 ④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잔여금 30% 이상) ⑤ 국채 등 국가채무 상환 (잔여금 30% 이상) ⑥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활용계획 (§90의2) - 초과 조세수입 발생시 세입세출외 처리 허용 ① 세입부족 보전용 당해연도 발행국채 금액 범위의 국채 상환 ② 미래대응기금 전출 * 전출시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예결위 재출 -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 ① (현행과 동일)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초과조세수입을 미래 대응기금 전출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제외 ② (현행과 동일) ③ 지방교부세 정산 ④ (현행과 동일) ⑤ (현행과 동일) ⑥ 추가경정예산 편성, 미래대응기금 전출 또는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 조세수입 및 세계잉여금 처리 규정을 제5장 ‘재정건전화’에 두고 있으며, 결산 후 세계잉여금은 먼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법정비율¹²⁾에 따라 정산한 후¹³⁾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 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후 남은 금액은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음. 이는 법정 배분기준에 따른 정산의무를 이행한 뒤 남은 재원을 국가채무 감축 등 재정건전화에 우선 활용하고, 그 이후 잔여

12) 현행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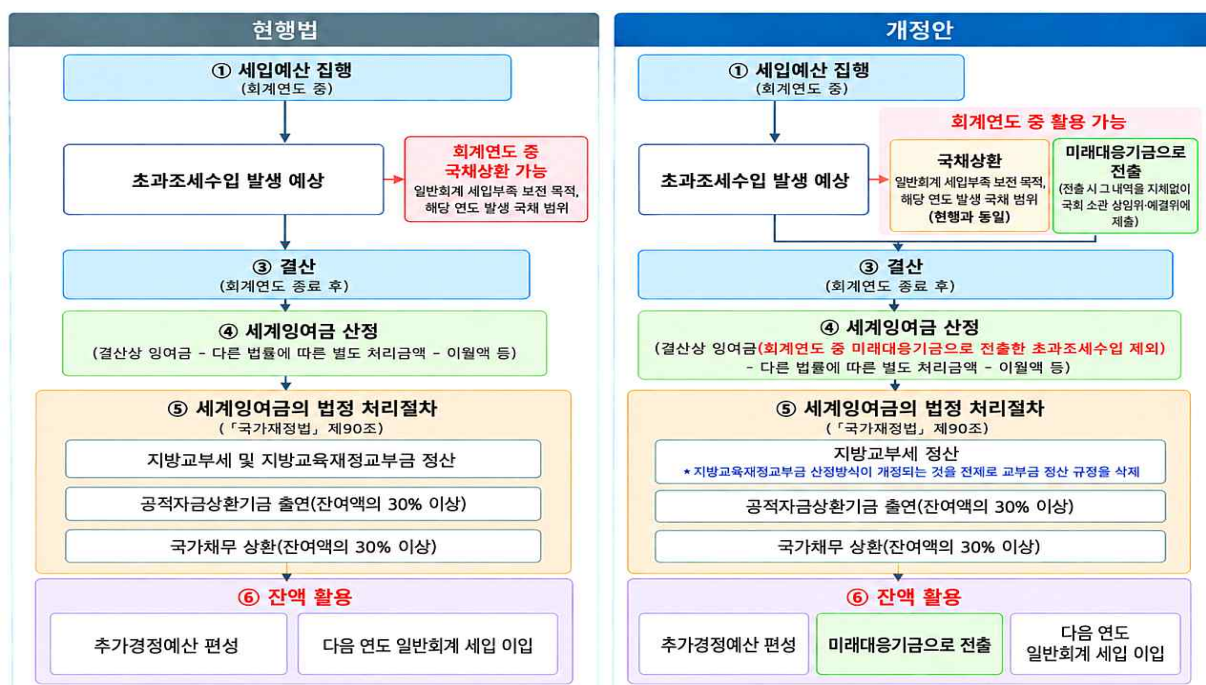
13)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내국세 등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발생한 교부세 및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함.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통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하도록 하는 체계로 볼 수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 처리체계에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출 경로를 추가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해당 연도에 초과 조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현행과 같이 국채상환에 사용하는 것 외에 미래대응기금으로도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회계연도 중 미래대응기금으로 이미 전출한 초과 조세수입은 결산 후 세계잉여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 등 법정 처리절차를 거친 후 남은 세계잉여금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초과 조세수입 및 세계잉여금 처리절차 비교]



이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¹⁴⁾에서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을 미래대응기금의 수입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연계하여, 해당 재원이 실제로 기금에 전입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상 전출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초과 조세수입을 세입·세출 외로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현행법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세입·세출 외로 처리하여 국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범위를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은 초과 조세수입을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출 규모에 별도의 한도를 두지 않고 있음.

또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추가세수의 경우에는 그 예상액 중 기금 전출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반면, 초과 조세수입은 이를 세입·세출 외로 기금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¹⁵⁾에 따르면 미래

14)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5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총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가세수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초과세수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래기금으로의 전입금
3.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에 따른 미래기금으로의 전입금
4.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1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047호, 2026. 9. 3. 정부 제출).

대응기금에 전출된 초과 조세수입 상당액은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내국세에서 제외되므로, 정부의 전출 결정에 따라 지방교부세 규모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회계연도 중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된 초과 조세수입은 결산상 잉여금에 포함되지 않아 기금 전출액만큼 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가 축소됨.

둘째, 개정안의 ‘초과 조세수입’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 ‘초과세수’ 간 개념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

개정안 제90조제1항16)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 세목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반면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초과세수’를 「국가재정법」 제55조의2에 따라 재추계한 내국세 세입예산 중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의하면서, 그 대상을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 법률에서 열거한 특정 내국세로 한정하고 있음¹⁷⁾.

16) 「국가재정법」 개정안

제90조(초과 조세수입 및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고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되,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지체 없이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의 국채 상환
2. 미래대응기금에의 전출

17)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내국세 세입”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 중 다음 각 목의 수입(관계되는 가산세 수입 및 해당 회계연도 전에 징수가 결정되었으나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된

이에 따라,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에는 ‘초과세수’가 아닌 것도 포함되며,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할 경우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규정 중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5조 제1항제2호의 “초과세수 중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입금”이 아닌 제5호18)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 따른 것이 됨.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법안의 초과 조세수입 관련 규정 비교]

구분	명칭	정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초과 조세수입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
미래대응 기금법안	초과세수	「국가재정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재추계한 내국세 세입예산 중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액을 초과하는 금액 * 내국세 세입: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담배분을 제외한 개별소비세, 인지세 및 증권거래세 합산 금액

수입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담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바. 인지세

사. 증권거래세

3. “내국세 세입 예산액”이란 특정 회계연도의 세입예산 중 내국세 세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초과세수”란 「국가재정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재추계한 내국세 세입예산(재추계 후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변경된 내국세 세입예산액을 말한다) 중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8)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5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총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가세수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초과세수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래기금으로의 전입금

3.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에 따른 미래기금으로의 전입금

4.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총괄계정 예수금”이라 한다)

7.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이하 “총괄계정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8.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교육·인재계정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9.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10.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리금 수입

11. 총괄계정의 운용 수익금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셋째, 세계잉여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규정 삭제는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임.

현행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 처리 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우선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교부세 정산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개정안과 함께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¹⁹⁾에 따라 교부금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예산편성 단계에서 교부금 규모가 확정되고 결산 이후 별도의 정산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는 경우 양 제도 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안의 처리 및 시행시기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026. 9. 3., 의안번호 제2221053호)은 2026. 9. 4.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동 개정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산정방식을 개편하여, 전년도 교부금액에 최근 3년간 명목 국내총생산 변동률 및 학령인구 변동률을 반영하여 해당 연도 교부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填)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90조(초과 조세수입 및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고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되,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지체 없이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의 국채 상환
<신 설>	2. 미래대응기금에의 전출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	② ----- ----- ----- ----- ----- ----- 정산----- ----- -----

현행	개정안
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 ⑨ (생략)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사용하거나 미래대응 기금으로의 전출에 사용할</u> --. ⑥ ----- <u>제5항</u>----- ----- <u>사용(제5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u> ----- ----- -----. ⑦ ~ ⑨ (현행과 같음)

마.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미래대응기금 관련법 추가 (안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 기금설치 근거법률(별표 2) - 미래대응기금 관련 규정 없음	○ 기금설치 근거법률(별표 2) - 기금 설치 근거법률에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포함

현행 「국가재정법」 제5조²⁰⁾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 대응기금이 신설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해당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는 미래대응기금의 설치근거를 「국가재정법」상 기금설치 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신설에 수반되는 법체계상 정비사항에 해당함.

문 의 처

02)6788-5148

20)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